

평창군의회 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 증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 2. 2 김진석의원의 3인
- 나. 회부일자 : 2000. 2. 10
- 다. 상정일자 : 제7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조례특위(2000.2.10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진석의원)

가. 제 안 이 유

- 지방의회 운영제도 개선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.

나. 주 요 골 자

- 조례명칭상 「회의수당」을 「회기수당」으로 변경(안제1조,제3조)
- 의정활동비를 「월35만원」에서 「월55만원」으로개정
(안제2조 제2항)
- 회기수당을 「1일 5만원」에서 「1일 7만원」으로 개정(안 제4조제2항)
- 의원 국내여비중 숙박비 상향조정(17,500⇒22,000)조정(안제4조 제2항)
- 의원 국외여비중 숙박비 상향조정(안 제4조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본 조례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는 명칭변경과 아울러 의정 활동비, 회기수당, 국내외 여비중 숙박비를 각각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서
- 이것은 지방의회 운영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'99년 8월 31일자 법률 제6,002호로 개정된 것을 근거로하여 개정 하려는 것임.
- 따라서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, 타법령 및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임 : 평창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